

IMO 제9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SC)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
(9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 기간/장소 : '12. 5. 16~5. 25 (12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연구원, 정부대행검사실 이운상 주임연구원

- WG 1 : 보안 및 해적
- WG 2 : GBS 및 FSA
- WG 3 : 여객선 안전
- DG :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강제문서(Mandatory Instrument)에 대한 개정
 1. SOLAS 협약에 대한 개정의 채택
 - II-1장 8-1규칙, “여객선에서의 침수사고 후 시스템능력 및 운항정보”
 - III장 20규칙, “작동준비, 정비 및 검사”
 - V장 14규칙, “선박의 인원(Ship’s manning)”
 - VI장 5-2규칙, “항해 중 액체산적화물의 혼합 및 생산공정의 금지”
 - VII장 4규칙, “서류”
 - XI-1장 2규칙, “강화된 검사(Enhanced surveys)”
 2. 2000 HSC Code의 개정 채택
 - 고속선의 EPIRB(비상위치표시무선표지)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14.15.10 규칙의 개정이 채택됨
 3. FSS Code의 개정 채택
 - 제6장 “고정식포말소화장치”, 제8장 “자동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 시스템”에 대한 개정이 채택됨
 4. IMDG Code 개정의 채택
 - DSC 16차에서 IMDG Code의 개정안 (36-12)을 동의하였으며, Circular letter

II. 주요 의제 목차

1. 작업반 구성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3.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4.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대한 협정서 발효요건 결정
5. 공식안전성평가
6. 해적 및 강도
7. 우리나라 발의 신규 작업의제 채택
8. 여객선 안전
9. 전문위원회 보고서 검토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1. 작업반 구성

No.3233으로 2011년 11월에 회람되었으며,
금번 회의에 채택됨

- 5. 1966 만재흡수선 협약 및 1988 의정서 개정의 채택
 - 1966 만재흡수선 협약의 개정 원안대로 준비하였으며,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서 초안을 함께 준비하였음.(1966 LL협약은 총회에서 개정을 채택함) 2013년 말에 개최되는 제28차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1966 만재흡수선 협약에 대한 1988 의정서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함.(1988 Protocol의 개정은 MSC에서 채택함) (2014년 1월 1일 발효)

3.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기준

- MSC 90차 의제문서
 - MSC 90/5 (사무국) : 이전 회기(MSC 89) 논의 결과 정리
 - MSC 90/5/1 (사무국) : GBS 검증계획 시행
 - MSC 90/5/2 (독일) : 안전수준기반 기준(standards)의 미래(future)
 - MSC 90/5/3 (한국 및 독일) : 위험도 기반 선박 설계 승인 지침
 - MSC 90/5/3/Corr.1 : MSC 90/5/3의 Summary 내용 오류 정정
 - MSC 90/INF.8 (한국) : 안전수준기반 선체 구조설계에 대한 고찰
-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사무국에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의 검증계획에 따른 사무국의 이행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GBS 검증을 위한 심사원 추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추천자수는 향후 원활한 검증 심사팀

(GBS audit team) 구성을 위해 부족하므로
심사자 추천을 독려하였음

- 독일이 제안한 안전수준접근법(SLA) 개발(further development) 제안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의 지지로 SLA 구조(framework)와 SLA 잠정지침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독일 및 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위험도기반 선박설계지침에 기초한 동등 및 대체(equivalents and alternative) 승인지침 개발은 가치있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통신작업반을 가동하여 지침을 개발하기로 함

4.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 협약에 관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대한 협정서 발효요건 결정

- 제106차 이사회에서 2012년 10월 9일~11일 (3일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협정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MSC 90차에서 사무국은 3일간의 짧은 외교회의 기간을 고려하여, 외교회의 개최전에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협정(안) 부속서의 아래와 같은 미결정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함
- 협약당사국이 되기 위해서 단순절차(묵시적 동의)를 이용할 경우 통보기간(12개월) 결정(협정서 제3조(5))
 - 제3조(5) : 협정서 채택일 전에 이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를 기탁한 국가와 협정서 제3조제(3)(c)항에 따라 이 협정서를 서명한 국가(협정의 당사국이 되겠다는 표현)는 이 협정서를 채택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항에 규정된 단순절차(묵시적 동의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수탁자(IMO)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서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협약 발효요건 결정(협정서 제4조(1))

* 제1안 : 비준국 15개국, 어선척수 3,000척

* 제2안 : 비준국 20개국, 어선척수 1,800척

* 제3안 : 비준국 30개국, 어선척수 1,800척

- 제4조(1) : 이 협정서는 제3조에 따라 구속된다는 동의(협정의 당사국이 되겠다는)를 표명한 나라가 적어도 [15][20][30]개국 이상이고 또한 이들 나라의 24미터 이상 어선의 합계척수가 적어도 [3,000][1,800]척에 달하는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 본회의 논의사항

- 위원회는 협정서(안) 발효요건의 결정을 위한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척수의 정확한 자료의 필요성 때문에, 사무국에서 전 회원국에 2012. 4. 11 Circ. letter를 발행하여 자국의 깃발을 단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척수 정보를 2012. 9. 4까지 요청한 사실에 주목함
-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가 지연됨을 우려한 각국 대표단들은 다가올 외교회의에서 만족스러운 협정을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주목함
 - 협정서의 발효상태와 관련하여 많은 대표단들이 비준국가수와 어선척수는 SLF 53 전문위원회에서 동의된 바와 같이 한 세트로 검토되어야 함에 동의
 - 전세계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척수의 정확한 정보는 현재 충분하지 않으므로 긴급하게 필요함

- 모든 노력들은 협정서의 발효를 위한 가장 빠른 가능한 날짜에 동의를 촉진하여야 함
- 제안된 “공해” 용어는 토레몰리노스 협약에 그 정의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공해”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정의되어 있음
- 협정안의 규칙 3(면제)은 EEZ 및 공동어로 구역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협정서에 규정의 점진적 이행제도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졌음을 인지하였음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협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 단순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보기간을 12개월로 정하도록 외교회의에 권고하는데 동의함
- 발효요건의 비준국가수와 어선척수는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되어야 함에 동의함
- 협정서(안)의 면제조항(EEZ 및 공동어로 구역) 및 정의(high seas)조항은 추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동의함
- IMO 사무국이 전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깃발을 단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척수를 IM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재촉할 것을 동의함
- 2012년 케이프타운 외교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국에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함

5. 공식안전성평가

- IMO 규칙 개발을 위한 공식안전성평가(이하 FSA) 지침서 및 안내서 개정안 작성 관련 작업반(WG2)은 아래 내용을 검토 후 위원회에 승인 요청함

- 인적요소분석절차(이하 HEAP)는 FSA와 분리하기로 함
- EAP 잠정지침서(MSC/Circ.878-MEPC/Circ.346) 개정은 필요 없음을 확인함
- 환경 FSA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초기 값 설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 요소 값은 MARPOL Annex를 따르기로 함
- FSA 수행시 전문가 그룹의 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함
- FSA 지침서 및 안내서 개정을 위한 별도의 통신작업반은 구성하지 않기로 함
- MSC 91차 회기전 3일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크루드오일탱커에 대한 FSA 결과를 검토하기로 함
- 위원회는 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승인하고 MSC 91차 회기전 3일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지시함

6. 해적 및 해상강도

□ 장관급회의 개최(5. 16)

- 우리나라 대표(장범구 실장)의 기조연설(6번째)
 - 해군함정파견, 무장보안요원고용 등 우리나라 현황 소개
 - 국제사회노력에 적극적 참여의사 피력 및 각국의 동참 촉구
 - ※ 외교부 문하영 대테러대사(UN CGPCS 제3작업반의장 자격) : 동 작업반 활동 발표
- 민간보안회사관리 국제규범, 선장-보안요원간 책임소재구분 필요성 등 제안 → 덴마크,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지지 확보

□ 민간무장보안회사(PMSC)에 대한 잠정 지침제정

- 적절한 자격과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박에

대한 무장보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PMSC에 대한 잠정 지침을 개발하여 MSC 회람문서로 채택함

* 동 잠정지침은 UN CGPCS(제3작업반 및 제2작업반)에서 마련한 초안을 검토하여 개발한 것임

- 이를 통해 선사가 PMSC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PMSC에 의한 총기류 오·남용 등 부작용 방지 기대

□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기국 이행 잠정지침 개발

- 선사·선박의 BMP 이행, 위험성 평가, 관련 당국 보고 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국에 대한 지침을 개발(채택?)

* 동 잠정지침은 UN CGPCS(제3작업반)에서 마련한 초안과 ICS 등 산업계가 제출한 문서를 종합하여 검토·개발하였음

- 아국은 이미 BMP 이행, 선원대피처 설치, 통항보고, 취약선박 보안요원 탑승 등 기국의 의무를 매우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중 하나이나, 기국 이행 지침의 강제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 강행 규범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화 노력 필요

□ 기타사항

- (연안국에 대한 보고) 인도(MSC 90/20/16)는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는 경우, 승선한 보안요원에 대한 상세정보를 연안국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무해통항권이라는 근본적인 해양법 취지에 반하는 점을 들어 반대여사를 표명하여 수용되지 않음

- (SOLAS에 별도 '장'으로 신설) 우크라이나(MSC 90/25/16)는 해적관련규정을 SOLAS에

별도 '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하지만 회원국들은 SOLAS는 해상안전에 관한 규정으로, 범죄와 관련 있는 해적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장일치로 반대

- (선원대피처내의 소화관 밸브 설치) 바하마(MSC 90/11/1)는 CO₂ 고정식 소화장치가 설치된 기관실 등을 선원대피처(Citadel)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고의적인 소화장치 조작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선원대피처 내부에 스톱밸브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
 - 회원국들은 바하마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시 하였으나, 관련 규정(FSS Code)에 위배되고, 밸브 오작동에 의한 화재시 소화장치 사용 불능 등을 우려하여 추후 적절한 해결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함

7. 우리나라 발의 신규 작업의제 채택

- 아국이 제출한 아래 3건의 신규 작업의제가 일본·싱가폴·호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어 해당 전문위원회(STW)에서 논의할 예정

1. 선박정비이력 이관을 위한 ISM Code개정

- 선박의 소유권 이전시 선박에 관련 이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SOLAS 협약 XI-1/5에서 선박이력기록부(CSR : Continuous Synopsis Record)가 선박의 운항일생(Operational Life)동안 선내에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비이력 및 사고 이력과 관련하여 SOLAS 74 협약과 ISM Code에서는 선박 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새로운 선박회사에 넘겨

주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고 이러한 기록은 만약에 새로운 선주가 선박 매매시에 명쾌하게 요구할 때에만 이전 선주의 재량에 따라 이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선박의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할 선박관리기록의 부재는 위험 기반예방관리와 추세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선박장비 및 기계의 고장과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을 저해함
- 따라서, 아국은 선박의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을 이관하도록 ISM Code 개정 작업에 대해 새로운 작업아이템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함
- 회의결과, 대한민국이 제출한 ISM Code 개정 제안에 대해 덴마크, 파나마 및 BIMCO 등 몇 개의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 및 선박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들어 반대하였으나, 독일, 네덜란드, 홍콩 등 다수의 국가가 동의하여 STW 전문위원회의 "ISM Code의 효율적이고 사용자편의 강화" 의제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함

2. 예부선 승무원 훈련요건 개발

- 아국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예부선(Tug-Barge)에 승선하는 해기사들 대상으로 예부선(Tug-Barge)의 운항특성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해기능력(Guidance on training and qualifications of personnel on tug-berge)의 개발을 제안함
- 회의결과, 예부선 승선 해기사 교육내용 개발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일본, 독일, 말레이시아)이 아국이 제출한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였음
- 이에, 차후 STW 44차 회기에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다루기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파나마를 비롯한 소수의 국가들은 현재 산업계 기준이

있으므로 특별히 기준을 만들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한 예비선이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선박이므로 국제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3. 수면비행선 해기사 해기능력 요건 개발

- 우리나라는 WIG선 조종사의 교육요건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으로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현재의 WIG선 조종사의 교육요건에 대한 권고 사항(MSC/Circ. 1162)을 정식 국제기준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 회의결과, 수면비행선 해기사 해기능력과 관련한 현 회람서인 MSC/CIRC.1162를 기반으로 개정 작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본 의제는 STW 44차 회의의 기존 의제인 “위그선 지침서 개발”의 하부 의제로 작업하기로 결정하였음

8. 여객선의 안전

- 2012년 1월에 발생한 이태리 국적의 Costa Concordia호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여객선의 안전이 MSC 90의 긴급의제로 포함됨. 해당 사고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 공식적인 해난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불리 여객선의 구조나 설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금번 회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
 - 여객선 안전향상을 위하여 여객선사에 권고 되는 단기조치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각국 정부 및 여객선 업체를 위하여, “여객선의 안전향상을 위한 조치”에 관한 MSC resolution을 채택함

- 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장기 작업계획(action plan for long-term work)을 승인함

9. 전문위원회 보고서 검토

□ 제19차 및 20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결과보고

- 선박이력기록부의 발급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FSI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함(회의장에서 각국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MSC 87에서 논의한 것처럼 Res.A.959(23)의 개정보다는 이의 이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음)
- IMO 통신작업반의 관리 및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계획 중인 통신작업반 관리(예, 참여자 관리, 관련 문서 업로드 등)를 위한 central platform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루기로 함
- FSI 20은 DE 55의 요청사항에 따라 MSC circular 초안 중 제5항(주관청이 면제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동 회의에서는 제5항의 제목을 “면제 및 검증 절차”에서 “면제 절차”로 수정하고, 제5항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만 이뤄짐

□ 제15차 무선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 (COMSAR) 결과

- 무선통신·수색구조 제15차 전문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요청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위원회 재확인 및 승인함
 - 「GMDSS 육상 설비 조사표」 서식 수정 :

- 코스파스-살샤프트 설비 운용 현황 항목 중 LEOLUT의 “LEO” 삭제, EPIRB 등록 데이터 항목 중 “scheme” 단어를 “method”로 대체 등
- 요트경기나 비 규정 선박(non-regulated craft)의 대양 항해를 위한 기본안전지침 초안에 구명정 및 통신기기 등 선박 필수 구비물품, 항해계획서 작성, 생존법 및 응급 조치법 등 포함
- 수색구조센터(MRCC) 보유 권고 문서(SAR, 7/Circ.10) : 2009년판 국제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2006년판 SAR협약, 2010년판 IAMSAR 매뉴얼 등
- 2013년 IAMSAR 매뉴얼 개정판에 EPIRB를 조난 초기에 수동 작동하도록 권고내용 삽입, 미사용 조난 비콘용 주파수 “121.5MHz” 삭제 등

□ 제16차 무선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 (COMSAR) 결과

- 무선통신·수색구조 제16차 전문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요청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위원회 재확인 및 승인함
- 세계항행경보서비스(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의 개정에 따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방송 관련 회람문서(COMSAR/Circ.36)의 철회
- 제19차 IMO/ICAO 수색구조 합동작업반 회의(12. 9. 10~14, 홍콩) 개최 승인
- WRC-12 결과 검토 및 WRC-15의 해상 이슈들에 대한 IMO 입장 검토 착수
- ※ WRC¹⁾-12, 15 주요 논의 사항

- 익수자 구조용 통신설비 채널을 포함하여 GMDSS 및 e-navigation의 개발, 해상 단파주파수에의 디지털기술도입을 위한 채널의 재배정
- 선박에 대한 해상안전과 보안정보디지털 방송을 위한 500kHz 주파수대역 사용 디지털 데이터전송 시스템(일명 NAVDAT)
- “AIS VHF 데이터 링크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초안을 NAV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MSC 91에서 승인되도록 검토
- : 미국 및 호주에서 AIS VHF 데이터 채널 보호를 위하여 MSC 결의서 MSC.140(76) 개정을 요구(AIS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는 ITU의 AIS 기술기준인 ITU-R M.1371 시리즈의 요건 만족과 주관청 승인 필요)
- 2013년 개정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ICAO의 의견을 수렴하여 IAMSAR 매뉴얼 수정 개정 회람문 초안 승인(사용 폐지된 주파수 (121.5MHz) 삭제, 해수에서 생존시간 그래프 수정 등/2013. 1월부터 적용)

□ 제55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결과

- SOLAS regulation II-1/28과 II-1/29의 통일 해석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선박의 방향제어를 위한 통상적인 배치가 아닌 추진 및 조타시스템을 설치한 선박의 조타 성능 및 기능에 관한 배치 관련)
- FP 55차 검토결과, 지침 초안의 3.3항에 [] 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인화점을 43℃로 정하여, 여객선용 부속선의 안전기준에 대한

1) WRC :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라는 유한한 자원을 세계의 각 나라가 지리적, 대역별로 적정히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는 전파통신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MSC circular를 승인함
- 여객선의 총비상경보의 시각장치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지침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위원회는 생존장비의 시험에 대한 개정된 권고에서 규정한 자유낙하 구멍정의 110% 하중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련하여 고려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DE 전문위원회의 관점을 주목함
- 구멍정 조정 장치 표준화 지침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구멍설비 모조품 및 기준미달 구멍설비에 관한 인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FSI 20에서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부식을 야기하지 않는 화물의 운송 및 화물 하역 작업에만 종사하는 원유운반선에 대한 면제 지침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특수 목적선 안전 Code, 2008 (2008 SPS Code)의 통일 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제56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결과
 - MSC 91에서 채택을 위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에 관한 새로운 SOLAS regulation III/17-1 초안을 승인하고 SOLAS 협약 VIII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의 초안을 회람시키도록 함
 - 새로운 SOLAS regulation III/17-1 초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MSC 91에서 채택을 위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SOLAS regulation III/17-1의 이행에 대한 MSC resolution 초안을 승인함
 -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계획 및 절차의 개발에 관한 지침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MSC 91에서 SOLAS regulation III/17-1 채택 시, 최종 승인하기로 함
 - 새로운 SOLAS regulation III/17-1 초안과 관련하여, ISM Code Part A의 8항에서 요구하는 비상준비계획서의 최신화와 관련하여 규정 초안 1항에서 제공된 날짜이후까지 이러한 규정의 적합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동의를 요청하며, 규정 초안에서 언급한 검사는 SOLAS chapter III과 관련하여 발행된 증서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DE의 결정에 동의함
 - SOLAS regulation III/20.11.2의 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SOLAS regulation III/20.11.2의 개정의 조기 이행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구멍정과 회수장비(MSC.1/Circ.1392)의 평가와 교체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구멍설비의 시험에 관한 개정된 지침(resolution MSC.81(70))에 따른 1.1배 하중시험 및 동시 이탈시험은 혹 장치뿐만 아니라 구멍정 이탈 장치가 고정된 구조적 연결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DE 56의 관점에 동의함
 - 현존 구멍정 이탈 및 회수 장비의 평가 결과는 새로운 GISIS의 모듈로 포함되어 공공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DE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 MSC.1/Circ.1206/Rev.1과 MSC.1/Circ.1277을 새로운 강제문서로 병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의 범위는 구멍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설비와 이탈장치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DE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 구멍정 외부 칼라와 관련하여 LSA의 1.2.2.6항의 통일 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선박에서의 소음레벨 코드 초안, 관련 Code를 강제화 할 SOLAS II-1/Reg.3-12규칙 초안 및 미국이 제출한 MSC 90/9/4문서를 함께

검토하였음. 미국이 제안한 사항 중 “dredger”와 “pile driving vessel”의 정의를 수정하고, 6.3항의 “shall”을 권고 성격인 “should”로 수정하였음

IACS는 Code의 문구에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서를 MSC 91에 제출하기로 함

선박에서의 소음레벨 코드 초안과 관련 SOLAS II-1/3-12 규칙을 MSC 91차에서 채택할 목적으로 금번에 승인하였음

- SOLAS regulation II-1/3-2의 통일 해석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에 대하여 몇몇 국가 및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MSC circular 초안은 승인하지 않고 DE 57에서 재검토하도록 함
- SOLAS regulation II-1/48.3(정기적으로 무인(無人)이 되는 기관구역의 비상 빌지 흡입 밸브의 제어)에 관한 통일 해석을 MSC circular로 승인함
- SOLAS regulation II-1/29.3과 29.4(조타 장치의 시험)에 관한 통일 해석을 MSC circular로 승인함
- SOLAS regulation II-1/3-5(석면을 포함한 재료의 새로운 설치)에 관한 통일 해석에 대하여 일본 및 IACS가 각각 제안한 사항을 반영하여 MSC circular를 승인함
- 의제 3에 있는 SOLAS regulation XI-1/2에 대한 제안된 개정의 채택과 관련하여 모든 선박과 벌크선박의 이중선체구역에서 (resolution MSC.215(82)) 전용 해수 밸러스트 탱크에 대한 보호 도장 수형 기준과 원유운반 선의(resolution MSC.288(87)) 화물유 탱크에 대한 보호도장 성능 기준에 대한 개정 초안을 승인함

- MSC-MEPC.2/Cir.10의 승인에 따르는 MSC.1/Circ.1284를 철회 필요하지 않고 SOLAS regulations II-1/1.3과 MSC.1/Circ.1284를 포함한 II-1/3-6의 통일 해석은 MSC-MEPC.2/Cir.10, 즉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회의 관점을 추인함

□ 제57차 항행안전전문위원회(NAV)결과

- 금번 MSC 90에서는 ECDIS에서 확인되는 작동오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 호주, 노르웨이 및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NAV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에 동의함
 - 위원회는 ECDIS에서 확인되는 작동오류와 관련하여 NAV 58 의제 13번 기타의제로 논의되는 것에 동의함
- 회의과정에서 바하마는 구형의 ECDIS 사용시 종이해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다수의 국가가 이에 동의함. 그러나 ISC는 종이해도 병행시 ECIDS의 필요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현하며 반대함
 -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수국가의 의견에 따라 구형 ECDIS의 경우 종이해도를 병행할 것을 통지함

□ 제55차 방화 전문위원회(FP)결과

- “헬리콥터 설비용 포말 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소화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 및 검사를 위한 개정된 지침”에 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SOLAS II-2/Reg.10.6.4 (Deep fat cooking equipment) 및 FSS Code의 9장에 관한 통일해석”에 대한 MSC circular를

- 승인함
-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종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당분간은 순수 자동차 운반선(pure car carriers, PCC)에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함
- SOLAS II-2장의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FTP Code의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SOLAS II-2/Reg.15(지침서, 선내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정을 승인함
- “선박구조내의 FRP의 사용에 대한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FP를 동 작업의 coordinator로 지정하여 줄 것에 동의함
- “SOLAS II-2장, FSS Code, FTP Code 및 관련 화재시험절차에 대한 통일해석(MSC/Cir.1120)의 개정”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화재 또는 침수 후의 여객선 시스템 능력의 평가에 관한 잠정 해설(MSC.1/Circ.1369)의 개정”에 관한 MSC circular를 승인함
- 제16차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결과
 - ‘위험물 운송선박의 비상대응절차서’ (EmS Guide) 개정관련 MSC circular 초안을 승인 요청
 - 위원회는 IMDG 코드 개정안(36-12)의 자발적 적용 및 발효일자가 Circ.에 반영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또한 DG에 의해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여, EMS GUIDE MSC Circ. 초안을 승인함
 - 운송작업에 관한 IMDG Code 파트7 요건의 개정(36-12)에 따라 개정 테이블 관련 MSC circular 초안을 승인함
 - 컨테이너선과 로로선에 싣는 화물운송단위(CTU)의 분리 도표 관련 MSC circular안을 승인함
 - 잦은 업데이트(매 2년마다)와 사무국에 조치 요청없이, 기술 협력을 위해 수년간 사용가능한 ‘위험·유해 화물에 관한 일반 model course’를 개발하도록 한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함
 - 액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철광석의 수송과 관련된 DSC. 1/Circ.66의 승인을 포함하여 산적 철광석의 수송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위원회에서 취한 조치를 승인함
 -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단위(CTU)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에 관한 MSC circular안을 승인함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을 강제화하기 위한 SOLAS Reg III/19의 개정초안이 DSC 17에서 결론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초안을 BLG 16과 STW 43에 보내기로 결정한 전문위원회 결정을 승인함(MSC 90/12/1 문서 회의결과 참조)
 - SLF 전문위원회에 ‘1988 Load Line 의정서’의 Reg. 44 para.(6)의 각주 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전문위원회 조치를 승인함
- 제14차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결과
 - MEPC 64('12. 10)의 승인을 조건으로, ESPH 17(화학제품의 안전 및 오염위험도 평가를 위한 BLG 작업반)의 작업결과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승인함
 - 두 개정안의 일괄(package) 채택 관점에서, MSC 90에서 채택을 위해 MSC 89에서 승인된

선박에서의 화물의 혼합을 금지하는 SOLAS VI/5.2 개정안과 항해중에 선박에서의 생산 공정을 금지하는 SOLAS VI/5.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본회의에서 위원장은 항해중 생산공정을 금지하는 SOLAS VI/5-3을 현재 위원회에 채택 요청된 SOLAS VI/5-2에 포함시켜 SOLAS VI/5-2를 금번 회기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함
- MEPC 63(12, 3)의 승인을 조건으로, 향후 채택을 위해, IBC Code의 개정안을 승인함
- MSC-MEPC.2/Circ.8에 기술된 화물의 혼합 금지는 항해중에 화물의 동종성(동일성) 혹은

온도조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열교환기 혹은 화물탱크 안에서 화물이 재순환 되는 경우와 기항지의 제한범위 안에서 같은 화물창안에 이미 2가지 혹은 3가지 다른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문 위원회 의견을 추인하고, SOLAS VI/5.2 개정안의 채택 검토 시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함

- MEPC 64(12, 10)의 승인을 조건으로, 2013년에 ESPH W/G(화학제품의 안전 및 오염 위험도 평가를 위한 BLG 작업반) 회기간 회의 개최를 승인함